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2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03월 21일(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4년 03월 25일(화)

4. 관련근거

가. 국민권익위원회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안)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7676, 2013.05.28)

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개선방안 통보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2048, 2014.01.21)

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운수관계자 배제 재요청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2350, 2014.01.24)

5. 개정이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위촉 대상에 이해관계자인 운송사업 조합 임직원은 배제하고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 심의 공정성을 위해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위원에서 제외(안 제3조)
- 위원 위촉 대상에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외에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을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민원 대표 전화 110 콜센터에 접수된 고충 민원 등 국민애로사항을 분석하여 마련한 46개 과제 제도개선안에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가 포함되어, 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버스, 택시 등의 교통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불신을 야기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 대상에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외에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을 추가하였으며, 버스·택시·화물 등의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제외하였음(안 제3조)

또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3조의2),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안 제4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안] [2013.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목 :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서울시)

□ 현황

- 승차거부, 합승 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면허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 부과
- 일부 지자체는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버스·택시 등의 법령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 서울 강동구, 구로구, 마포구 등은 운송사업단체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

□ 문제점

-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배제 장치 미비
- 버스, 택시 등 교통관련 단체에 속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처분대상자와 동일 단체 소속 위원이 위촉될 가능성
 -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택시나 버스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서로 봐주는 식으로 처리되고 있음('13. 1월 민원접수 사례)
 - 시민의 승차거부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10%에 불과('13.1.27, 연합뉴스)

□ 개선방안

-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규정 마련(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규칙 개정)
※ (참고) 서울 노원구는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 구성에서 제외(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 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